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예비군대대 운영규정
2. 규정류 개정사유 :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일부내용 추가
3. 주요내용
 - 가. 내용 수정 및 보완 : 전입신고,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구체화, 대상별 교육훈련시간, 소집통지서 전달, 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등
 - 나. 추가 : 훈련지원,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안전통제, 개인정보보호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2026년 6월 1일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령, 예비군 조직 및 편성에 관한 훈령, 예비군 길라잡이, 51사단 예비군교육훈련지시
 - 나. 예산조치 :
 - 다. 관련부서 : 예비군대대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1부
 - 나. 규정류 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6월 1일

소관부서 : 예비군대대 

관련부서 : (인)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예비군대대 운영규정
2. 규정류 개정사유 :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일부내용 추가
3. 주요내용
 - 가. 내용 수정 및 보완 : 전입신고,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구체화, 대상별 교육훈련시간, 소집통지서 전달, 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등
 - 나. 추가 : 훈련지원,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안전통제, 개인정보보호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2026년 6월 1일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령, 예비군 조직 및 편성에 관한 훈령
예비군 길라잡이, 51사단 예비군교육훈련지시
 - 나. 예산조치 :
 - 다. 관련부서 : 예비군대대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1부
 - 나. 규정류 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6월 1일

소관부서 : (인)

관련부서 : (인)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예비군대대 운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7조(전입신고) 교원 및 학생예비군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전입신고) 교원 및 학생예비군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2. 학생예비군은 학교 홈페이지 웹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적관리 - 예비군관리 - “예비군전입신고서”를 클릭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예비군대대장은 확인하여 전입조치한다. 	<p>전입신고 방법을 현행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군대대 직접 방문 2. 홈페이지 웹지원시스템 이용하여 “예비군전입신고서” 작성 																																								
<p>제11조(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과목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67 1288 572 1344"> <thead> <tr> <th>구분</th> <th>시간</th> <th>정신교육</th> <th>과제훈련</th> <th>사격</th> </tr> </thead> <tbody> <tr> <td>시간</td> <td>8</td> <td>2</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시간	정신교육	과제훈련	사격	시간	8	2	4	2	<p>제11조(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과목은 육군 참모총장의 예비군훈련 규정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수임군부대의 예비군교육훈련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26.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교육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이다 ②교육과목은 안보교육, 개인화기사격, 영상모의사격,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시가지전술 등 5과목이다. ③훈련진행은 분대단위로 조편성을 실시한 후 5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과 위주의 자율참여형훈련을 실시 한 후 우수한 분대는 2시간 이내 조기 퇴근을 실시한다. 불합격 분대는 합격시까지 재평가를 실시한다. 	<p>교육훈련 과목 수정 및 훈련진행 추가</p>																														
구분	시간	정신교육	과제훈련	사격																																						
시간	8	2	4	2																																						
<p>제13조(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67 1787 552 1973"> <thead> <tr> <th>구분</th> <th>훈련시간</th> <th>항방 기본훈련</th> <th>항방 작계</th> <th>동원훈련 I형(II형)</th> </tr> </thead> <tbody> <tr> <td>교수</td> <td>8</td> <td>8</td> <td>0</td> <td>0</td> </tr> <tr> <td>직원·조교</td> <td>36</td> <td>0</td> <td>12</td> <td>24</td> </tr> <tr> <td>학생</td> <td>8</td> <td>8</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훈련시간	항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	동원훈련 I형(II형)	교수	8	8	0	0	직원·조교	36	0	12	24	학생	8	8	0	0	<p>제13조(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26.00.00.)</p> <table border="1" data-bbox="604 1787 1085 2004"> <thead> <tr> <th>구분</th> <th>훈련시간</th> <th>기본훈련</th> <th>작계훈련</th> <th>동원훈련 I형(II형)</th> </tr> </thead> <tbody> <tr> <td>교수</td> <td>8H</td> <td>8H</td> <td>0</td> <td>0</td> </tr> <tr> <td>직원·조교</td> <td>24H(32H) [1~6년차], 20H [5~6년차]</td> <td>8H [1~6년차]</td> <td>12H [5~6년차]</td> <td>24H(32H) [1~6년차]</td> </tr> <tr> <td>학생</td> <td>8H</td> <td>8H</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훈련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 I형(II형)	교수	8H	8H	0	0	직원·조교	24H(32H) [1~6년차], 20H [5~6년차]	8H [1~6년차]	12H [5~6년차]	24H(32H) [1~6년차]	학생	8H	8H	0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상별, 훈련과정별 시간 구체화 2. 훈련과정 용어 수정 : 항방0000 →삭제
구분	훈련시간	항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	동원훈련 I형(II형)																																						
교수	8	8	0	0																																						
직원·조교	36	0	12	24																																						
학생	8	8	0	0																																						
구분	훈련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 I형(II형)																																						
교수	8H	8H	0	0																																						
직원·조교	24H(32H) [1~6년차], 20H [5~6년차]	8H [1~6년차]	12H [5~6년차]	24H(32H) [1~6년차]																																						
학생	8H	8H	0	0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회수) ① 예비군 교육소집통지서는 교육실시 14일전까지 해당 학과장(조교)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전달한다.</p> <p>② 통지서는 본인이 지참하여 교육훈련에 참석하여 총기수령 등 신분확인용으로 제출한다.</p> <p>③ 수령증은 학과장(조교)이 회수하여 예비군대대에 제출하여 교육훈련 불참 등으로 인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p>	<p>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①예비군 소집통지서는 교육실시 30일전에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하여 개개인에게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전까지(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p> <p>② 모바일 전자고지는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고지일 포함)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후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 7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0.00.)</p>	<p>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방법 수정</p>
<p>훈련지원 사항 “없음”</p>	<p>제18조(훈련지원) 학생예비군의 훈련성과를 위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며 예비군대대장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계획보고서 포함하여 보고하고 결과를 유지한다. <신설 2026.00.00.></p> <p>① 학생 예비군 훈련 등록 및 복귀시 훈련장 이동을 위한 임대버스 지원 (수원역, 장안대 출발)</p> <p>② 학생 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한 음료 및 간식비 지원</p> <p>③ 학생예비군 훈련부대에 격려금 지원</p>	<p>추가 *현재 장안대학교 예비군대대 훈련지원사항 추가</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없음”</p>	<p>제19조(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총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 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신설 2026.00.00.></p> <p>① 예비군대대장은 학생예비군 훈련기간에는 해당 학생의 학과의 교수 또는 조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훈련대상 인원과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협조한다.</p> <p>② 훈련 후 무단불참 또는 연기자는 해당 학과로 추가 협조문을 발송하여 해당 일에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한다. 수업을 불참 시에는 결석처리가 가능하다.</p> <p>③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에는 처벌(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이하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p>	<p>예비군법 관련 규정 추가 -학생예비군 출석처리 협조 -학생예비군 불리한 처우시 처벌 규정</p>
<p>안전통제 “없음”</p>	<p>제20조(안전통제) 예비군대대장은 학생예비군 훈련시 입소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현장에 위치하여 안전통제를 병행한다. <신설 2026.00.00.></p>	<p>학생예비군 훈련시 안전통제 추가</p>
<p>개인정보보호 “없음”</p>	<p>제21조(개인정보보호) 학생예비군 인적사항과 관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군번 등 개인정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 외에는 열람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문서로 발송할 경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6.00.00.></p>	<p>문서작성 및 발송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사항 추가</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18조(동원훈련) 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손실보충요원으로 편성하며 동원훈련은 제외한다. 다만, 학교에 미 신고하여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발행시는 우선 재학증명서 1부를 병무청에 제출 후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 동원훈련을 보류한다</p> <p>② ③ (생략)</p>	<p>제22조(동원훈련)</p> <p>① 학생예비군은 학업 보장을 위하여 방침일부보류자로 분류하며 동원훈련은 제외한다. 다만, 학교에 미신고하여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발생 시는 우선 대학 홈페이지 웹지원시스템에 예비군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예비군대대는 직권으로 신고한 학생을 방침일부보류자로 관리한다. (개정 2026.00.00.)</p> <p>②,③ (현행과 같음)</p>	<p>1. 용어 수정 :손실보충요원 → 방침일부보류자</p> <p>2. 보류원서 제출 및 신고 방법 수정</p>								
<p>제21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 지휘관의 정년 및 선발시험은 다음과 같다.</p>	<p>제25조(지휘관 정년 및 선발시험)</p> <table border="1" data-bbox="600 869 1098 990"> <thead> <tr> <th>구 분</th> <th>정 년</th> <th>계급/선발시험</th> <th>임명권자</th> </tr> </thead> <tbody> <tr> <td>대대장</td> <td>60세</td> <td>중령/국방부</td> <td>국방부장관</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년	계급/선발시험	임명권자	대대장	60세	중령/국방부	국방부장관	<p>1. 관련 조항 수정</p> <p>2. 현 장안대 예비군대대 제대규모 지휘관만 명시</p>
구 분	정 년	계급/선발시험	임명권자							
대대장	60세	중령/국방부	국방부장관							
<p>제26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p> <p>① (생략)</p> <p>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예비군 실무편람」 	<p>제29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예비군훈련 길라잡이, 사단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p>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p>								
<p>제18조(동원훈련)</p>	<p>제22조(동원훈련)</p>	<p>제18조부터 제21조항 추가로 관련조항 수정</p>								
<p>제19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p>	<p>제23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p>									
<p>제20조(직급)</p>	<p>제24조(직급)</p>									
<p>제21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p>	<p>제25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p>									
<p>제22조(대대본부 편성)</p>	<p>제26조(대대본부 편성)</p>									
<p>제23조(구성)</p>	<p>제27조(구성)</p>									
<p>제24조(임무)</p>	<p>제28조(임무)</p>									
<p>제25조(회의)</p>	<p>제29조(회의)</p>									
<p>제26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p>	<p>제30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